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재다168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원고(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B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8. 14. 자 2024다24859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이 부분 재심사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권영준

주심 대법관 박영재